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번호	20-181관련
------	----------

발의연월일 : 2020. 12. 08.

발 의 자 : 김영미 외 1명

1. 수정이유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가. 제6조제1항제3호의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를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반경 10m이내”로 수정함.
- 나. 제6조제1항제6호의 “하천 일대의 보행자길”을 “하천수가 흐르는 공간의 보행자길”로 수정함.
- 다. 제6조제1항제7호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신설함.
- 라. 제6조제1항의 “제7호”를 “제8호”로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의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를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반경 10m이내”로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의 “하천 일대의 보행자길”을 “하천수가 흐르는 공간의 보행자길”로 수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를 신설한다.

제6조제1항의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u>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반경 10m이내</u>
4. ~ 5.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6.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일대의 보행자길	<u>6.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수가 흐르는 공간의 보행자길</u>
7. (현행 제6호와 같음)	<u>7.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u>
	8. (현행 제6호와 같음)